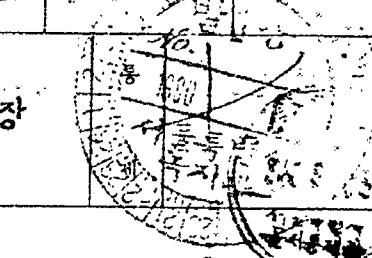


기안용지

분류기호	녹지 1153-14-	(전화번호 362-4568)	전결구성 3 국장 전결사항	
문서번호				
처리기간	46	시장		
지행일자				
보존년한				
보조기관	녹지국장 전결	80. 6. 10.	법무 담당관 심사필	
보호과장	녹지과장	고시제 204호		
보호과장	보호과장	80. 6. 10.		
기안책임자	유금종			
경유수선참조	각안참	발	시장	
제목	보호수 지정 해제			
(제1안) 내부결재				
1. 도봉구청장 및 마포구청장으로 부터 요청된 보호수 지정 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산림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해제 코자 합니다.				
가. 다음은				
지정번호	지정년월일	수종 및 수령	금회조치	사유
제34호	68.7.3	은행나무 900년	해제	부분 고사로 낙지 위험
제40호	"	느티나무 2주 200년	1주 "	완전고사
제43호	"	" 300년	존치	부분고사 (보 척공사) 내상부
제48호	"	희화나무 2주 800년 의 3주	존치	" (") 관인
첨부 : 고지안 1부				
제2안				
수신 도봉구청장				
장조 녹지과장				

0201-1-8A(급)
1969. 11. 10충 인

三

수신 도봉구 청장

참조 녹지과장

제목 동 건

1. 농지 1152-11712 (80. 5. 21)호와 관련됨.
2. 전호로 요청한 보호수 제34호 지정 해제에 대하여 위험 고사지 제거시 보존 가치 상실로 벌침 고사문과 같이 해제하였기 통보 하니
가. 위험 고사는 조속히 제거하여 낙지로 인한 인근 피해가 발생
치 않도록 조치 할것이며
나. 표석은 회수 보관 토록 할것.

첨부 : 고시문 사본 1부. 끝.

제3안

수신 마포구청장

참조 산업과장

제목 동 건

1. 산업 1153-440 (80. 3. 3) 및 산업 1105-1031 (80. 6. 1)호와 관련됨.
2. 전호로 요청한 지정 보호수 지정 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지시아니 업무에 짚어 없도록 할것.
가. 보호수 제40호 느티나무는 2주종 고사문 1주 지정 해제하였으며
나. 보호수 제43호 및 제48호는 기 통보한 바와 같이 (농지 1153. 13 (80. 5. 15)
도청공사 대상목으로 부분 고사지를 정비 할 위계이니 관리에 철저를 기할것이며
다. 기해제 통합된 (72. 10. 12) 지정 보호수 제42호의 표석이 현지에
방치되어있으니 이를 회수 보관 할것.

첨부 : 고시문 사본 1부. 끝.

제4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 농지과장

제목 동 건

1.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정 보호수를 해제하였

기 통보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1부. 끝.

고 사 (안)

서울특별시마사회 11호

노거수 지정 해제

심사	1980. 6. 5	재/	9
당당자	임계재장	부서	마사회
			62

산림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수목을 노거수 지정 해제
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

1980. 6. 5.

서 울 특 별 시 장

구 분	1	2
지정 구분 및 번호	노거수 34호	노거수 40호 줄 1
소재지	도봉구 미아동 681	마포구 합정동 101
소유	마을 공동	사 유
해제사유	부분 고사 및 낙지위험	자연고사
해제일자	1980. 6. .	1980. 6. .
해제기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